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April,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시행 규정》 공포

1. 반제재 조치의 정비
2. 반제재 절차의 구체화
3. 부서 간 협력 강화
4. 조치 이행 강화

■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최고인민법원, 외국 국가 면제 관련 민사사건의 절차 사항 명확화
02.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 공포
03. 국무원,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공포
04.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 제 4 차 노동·인사 분쟁 대표 사례 공동 발표
05. 최고인민법원, 제 1 차 집행절차 관련 특별 지도사례 발표

■ 법률 뉴스 ■

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시행 규정》 공포

2025 년 3 월 23 일, 중국 국무원은 2021 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이하 ‘반외국제재법’)의 시행 규정(이하 ‘시행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시행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전체 22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제재 조치의 정비

‘시행 규정’은 ‘반외국제재법’ 제 6 조 제 2 호에 규정된 ‘기타 각종 재산’을 명확히 하여, 현금, 어음,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재산과 재산권리에 대한 압류·동결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 6 조 제 3 호에 규정된 ‘거래·협력 등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 활동에는 교육, 과학기술, 법률서비스, 환경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보건, 체육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6 조 제 4 호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중국 국내에서의 투자 활동 금지, 관련 품목의 대외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허가·체류·거주 자격의 취소 또는 제한, 벌금 부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반제재 절차의 구체화

반제재 조치 시행 과정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대외 협의를 수행할 권한을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반제재 조치 결정 시, 그 적용 대상, 구

체적 조치 내용, 시행일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해당 결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하고, 필요 시 신속히 갱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서 간 협력 강화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및 업무 분담에 따라 반외국제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4. 조치 이행 강화

반제재 조치를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주체에 대해 정부 조달, 입찰참여, 물품·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 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수령 또는 해외로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출국 및 중국 내 체류·거주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반제재 조치를 받은 조직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소멸시킨 경우, 관련 조치의 정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도 규정하였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최고인민법원, 외국 국가 면제 관련 민사사건의 절차 사항 명확화 
02.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 공포 
03. 국무원,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공포 
04.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 제 4 차 노동 • 인사 분쟁 대표 사례 공동 발표 
05. 최고인민법원, 제 1 차 집행절차 관련 특별 지도사례 발표 

법무법인[유] 지평